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7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전용기・이수진・신정훈

조계원 · 김용만 · 이소영

전진숙 • 박해철 • 권칠승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·활용 정책과 달리, 협상· 매입·기증 등을 통한 '환수'나 현지에서의 '보존 및 활용' 등이 정책 의 주요 방향임.

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 • 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 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 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[제2조제9항,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 (제67조, 제68조, 제69조, 제69조의2, 제69조의3, 제69조의4) 삭제]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외문화유산의 보존・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57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9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.

제8장(제67조, 제68조, 제69조, 제69조의2, 제69조의3, 제69조의4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① ~ ⑧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⑧ (현행과 같		
	<u>수</u>)		
⑨ 이 법에서 "국외소재문화유	<u><삭 제></u>		
산"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「국			
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			
따른 문화유산(제39조제1항 단			
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			
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			
한다)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			
적·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			
있는 것을 말한다.			
⑩ ~ ⑬ (생 략)	⑪ ∼ ⑬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)	제6조(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)		
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	①		
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의			
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・			
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			
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			
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			
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			
다.	.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7의2.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	<u><삭 제></u>		
및 활용에 관한 사항			

7의3. ~ 9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

제67조(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) <삭 제>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 호 · 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 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68조(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 | <삭 제> •연구)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 · 관리 실태.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 사 ·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•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, 한국국제교류재단, 국 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 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 으며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9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<삭 제> 환수 활동의 지원) ①국가유산 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
7의3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·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9조의2(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)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 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9조의3(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)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·연구,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·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·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(이하 "국외

<삭 제>

<삭 제>

문화유산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「국가유 산보호기금법」에 따른 국가유 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.
-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, 반

 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・연

 구
- 2.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

 보호에 관한 연구
- 3.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

보존・관리

- 4.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•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
- 5.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활용 관련 홍보·교육·출판및 보급
- 6.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 원
- 7. 한국담당 학예사의 <u>파견 및</u> 교육 훈련
- 8.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
- 9.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.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.
- 10.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 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①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 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 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

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제69조의4(금전 등의 기부) ① 누 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 수・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 에 기부할 수 있다.

-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, 관리・운영 방
-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

<u><삭 제></u>

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·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 는 자에 대하여 시상(施賞) 등 의 예우를 할 수 있다.